

제24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「임실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 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.

2015. 3. 13.

임실군의회 의장

## 1. 제정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(안 제3조 ~ 제5조)
- 나.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(안 제6조)
- 다.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를 규정 (안 제7조 ~ 제8조)

## 3. 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,
- 나. 예산조치 : 2015년 본예산 6,000천원 확보
- 다. 협의 등 : 예산팀장 협의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(비규제)
- 마. 기 타

- 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2) 입법예고(2015.01.27.~2015.02.16.)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 : 붙임(미첨부 사유서)
- 4) 성별영향평가분석 : 붙임
- 5) 관련법령 발췌문 : 붙임

## 임실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 범위)**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임실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**제3조(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)** ①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×4cm) 사진 2매
2.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,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
3.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[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]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등을 확인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

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금연지도원증(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
2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합판(3×4cm) 사진 1매
3.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) 1부

**제4조(금연지도원의 임기)**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5조(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)**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(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)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,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·폐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)**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군 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

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.

**제7조(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)**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(5시간 이상 근무)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, 새벽,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8조(실적보고 등)**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금연지도원 신청서

신청인	성 명 (한 자)		사진 (3cm×4cm)
	생년월일		
	주소(전화번호)		

자격요건 및 신청사유(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)

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임실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

월 일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: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(서명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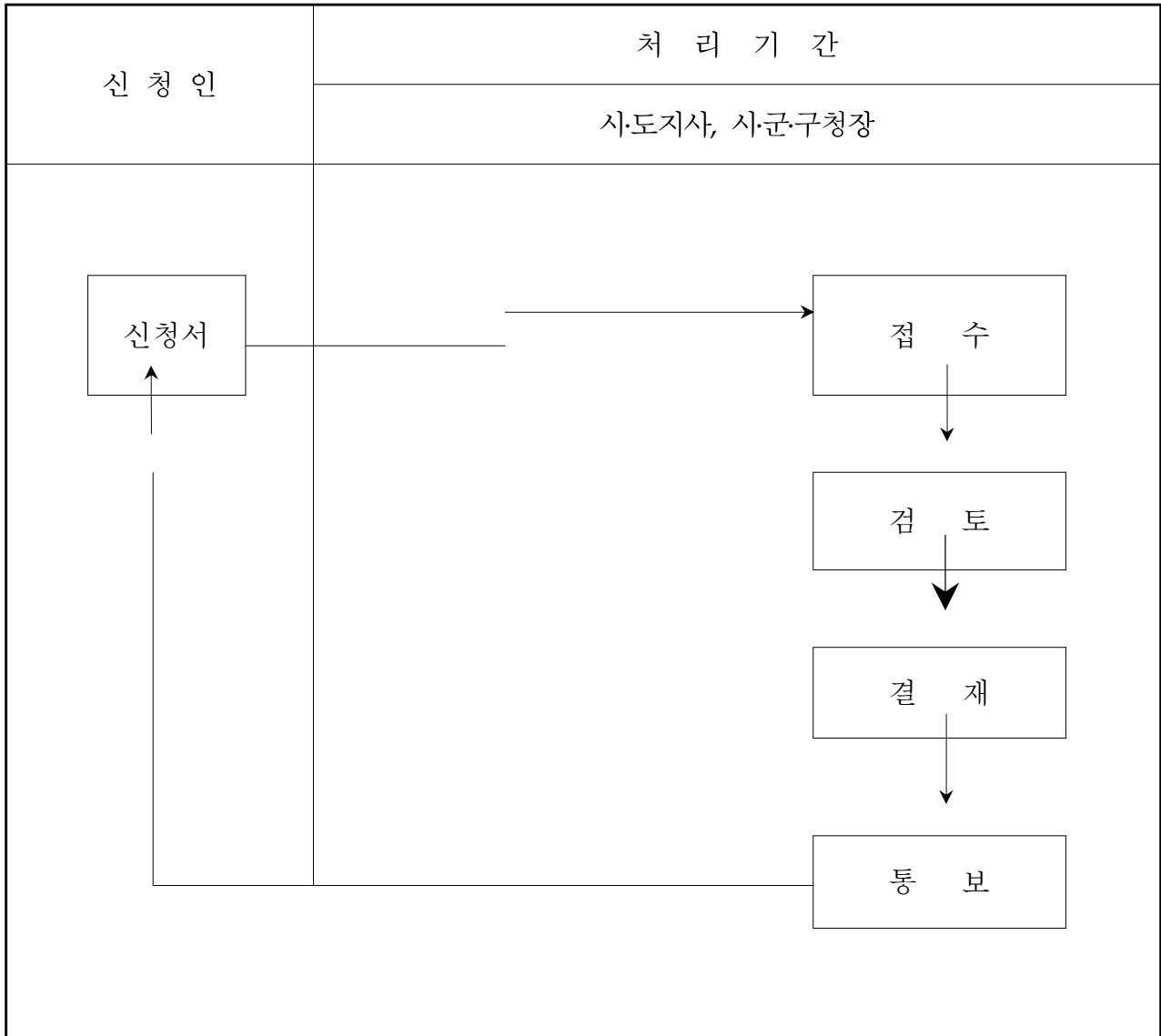
### 임 실 군 수 귀하

첨부물	1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2매 2.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,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(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)
-----	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

[별지 제2호서식]

## 금연지도원 추천서

신청인	성명 (한자)		사진 (3cm×4cm)
	생년월일		
	주소(전화번호)		

자격요건 및 추천사유(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)

위 사람을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,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추천기관장: (서명 또는 인)  
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: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,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약자 (서명 또는 인)

임실군수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]

[별지 제3호서식]



제 20 - 호

# 위 축 장 금 연 지 도 원

소 속:

성 명: (한 자)

생 년 월 일:

위 축 기 간:

위 사람을 임실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임 실 군 수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]

[별지 제5호서식]

(앞 쪽)

제 호

**금연지도원증**

사 진

3cm×4cm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
뒤 그림 없이 6개월  
이내에 촬영한 것)

성 명

**임 실 군 수**

60mm×90mm

(색상 : 연파랑)

(뒤 쪽)

소 속:

성 명:

생년월일(성별): ( )

위 사람은 임실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 
관한 조례 제3조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 
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**임 실 군 수** 적인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법에서 정하는 감시·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
☎ 전화번호 : 063-640-3133

주) 지질은 보존용지(1종) 120g/m<sup>2</sup> or 플라스틱



[별지 제7호서식]

단독 직무수행 승인서				
금연 지도원	① 소속(단체명)		② 성 명	
	③ 생년월일		④ 전화번호	
	⑤ 주 소			
⑥ 출입 기간		년 월 일 부터	년 월 일 까지	
⑦ 출입 장소				
⑧ 직무수행범위				
<p>임실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1.2em;">임 실 군 수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red; padding: 2px 5px;">직인</span></p>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## 임실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재정수반요인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 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인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해당없음

### 4. 작성자

- 보건사업과장 박 영 자

##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

관리번호	2015A전북임실003		
정책명	임실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		
소관부서	기관명	전라북도 임실군	
	부서명	보건의료원	
	담당자명	오은경	전화번호 063-640-3133
주요 분석평가 내용 (보건의료원)	<p>제3조(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) ①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등을 확인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.</p> <p>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실적보고 등)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	
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(분석평가책임관)	<p>제3조(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)</p> <p>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등을 확인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. <b>금연지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</b></p> <p>제8조(실적보고 등)</p> <p>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<b>활동계획을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수립하고</b>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	

	<p>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<b>성별분리통계를 작성</b>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
<p>검토의견 반영 결과 (보건의료원)</p>	<p>제3조(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) ② 금연지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라는 의견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겠음. 제8조(실적보고 등)에 대해서는 문제점 발견시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향후 개선해 나가겠음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5년 01월 23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보건사업과장</b></p> <p>분석평가책임관 귀하</p>	

## 관련(상위) 법 발췌문

### □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 5

-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
  2.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
  3.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
  4.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⑦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
  1.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
  2.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
  3. 그 밖에 개인사정,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

경우

-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□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

제16조의4(금연지도원의 자격 등)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  2. 건강·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.
-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, 금연의 필요성,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